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92
----------	------

제출년월일 : 2018. 9. 2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1회만 연임) 규정 삭제(안 제4조)
- 나. 행정재산의 지적정리 조항을 신설(안 제18조의2)
  - 각종 공유재산사업 준공 후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정리를 하도록 함
- 다.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38조)
- 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정비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 붙임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8. 30. ~ 9. 18.(19일간)
    - 나) 예고기간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납여부”를 “수납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대”를 “전대(轉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설치여부”를 “설치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한다.

제9조 중 “가능한 한”을 “가능하면”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사전에”를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4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속토지에 한한다”를 “부속토지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의하고”를 “따르며”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지적정리) 시 및 구·군의 공유재산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도로·하천개설 및 변경, 공원조성 등 각종 사업의 준공 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의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2제1항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에 따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대하는”을 “전대(轉貸)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21조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로, “내구년수”를 “내구연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5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1조에 따른”으로, 같은 항 부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로,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을 각각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같은 목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중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를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년월일”을 “연월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으로,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을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정기간동안”을 “일정기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제1호 중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건립한 지식산업센터

제40조제3호 후단 중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 중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8조에 따라”로 한다.

제43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도괴위험”을 “무너질 위험”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0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5조제3호 중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3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을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으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비중”을 “운영비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1조 중 “제50조 내지 제60조”를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로 한다.

제8장의 제목 “보 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를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규칙이”를 각각 “규칙에서”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로,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65조 중 “공유재산중”을 “공유재산 중”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6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3조(시유재산 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구청장·군수에게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시유재산 관리사무의 위임) ①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군수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 ④ (생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한다.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생략)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 ----- -----.
제8조(공유재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별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공유재산의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 실태조사)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② 제1항에 따라 ----- -----.

같다.

- 1. (생략)
-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4.·5. (생략)
-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생략)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 등은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받는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속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1. (현행과 같음)

2. ----- 수납 여부

3. 전대(轉貸) -----

4.·5. (현행과 같음)

6. ----- 설치 여부

7. 그 밖에 -----

③ (현행과 같음)

④----- 필요로 하는 -----  
-----  
-----  
-----.

제9조(재산의 집단화) -----  
-----  
----- 가능하면 -----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 법령에 따라 -----  
----- 미  
리 -----.

② ----- 제1항에 따라 -----  
-----  
규칙에서 -----  
----- 알려야 -----.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  
-----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  
----- 부속토지로 한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

제17조(무상사용 기간) -----  
----- 따르며 -----  
-----  
-----.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지적정리) 시 및 구·군의 공유재산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도로·하천개설 및 변경, 공원조성 등 각종 사업의 준공 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의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  
-----  
----- 해당 -----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법 제27조에 따라 -----  
----- 제21조에 따라 -----  
-----  
-----  
--.

② -----  
-----  
----- 영 제14조에 따라 -----  
-----  
-----.

③ -----  
----- 전대(轉貸) -----  
하는 -----  
-----  
-----.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  
-----  
-----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일반재산의 준용) ① 행정재산의 수의 계약 사용·수익허가 조건 사용료율, 일시사용 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생략)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생략)

-----.

⑤ ----- 영 제21조의 ----- 해당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 내구연수 -----.

제23조(일반재산의 준용) ① -----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게을리하여 ----- 법 제35조에 따라 ----- 그 밖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 등) (현행과 같음)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4제2항에 따라 -----

2. ----- 제8조에 따른 -----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공유임야 등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2.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 4. (생략)

④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2. (생략)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재산

4. (생략)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인구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  
-----  
----- 해당 -----  
-----  
-----  
-----  
-----  
-----  
-----

② ----- 해  
당 -----.

1. 2. (현행과 같음)

③ ----- 해  
당 -----.

1. ~ 4. (현행과 같음)

④ -----  
-- 해당 -----  
-----  
----- 해당 -----  
-----.

⑤ ----- 해  
당 -----.

1. 2. (현행과 같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  
조제1항에 따라 -----  
-----  
-----  
-----  
--

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  
터 제3호까지 -----

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지역 안에 이전하는 경우에 대부하는 재산

6. ~ 8. (생략)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② (생략)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5. (생략)

④·⑤ (생략)

⑥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의 상업용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 건물 등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 마. (생략)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

-----  
-----  
-----

6. ~ 8. (현행과 같음)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

-----  
-----  
-----

1. ~ 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  
-----  
-----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 영 제35조에 따라 -----

-----  
-----  
-----

-----

1. -----

-----  
-----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

-----  
-----  
-----

-----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  
-----  
-----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

아. (생략)

자. (생략)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  
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라. (생략)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  
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  
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  
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생략)

아. (생략)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  
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라. (생략)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  
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  
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  
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

아.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생략)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 ⑤ (생략)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  
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

아.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2.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3.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아. (현행과 같음)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  
-----  
-----.

와 같다.

1. ~ 3. (생략)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등이 전년도에 대부료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 ③ (생략)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하였거나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생략)

2. 대부계약 연월일

3. ~ 9.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  
-----.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  
----- 해당 -----  
-----  
-----  
--.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  
-----  
-----  
-----.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연월일

3.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 제1항에 따라 -----  
-----  
-----  
-----  
-----.

1.·2. (현행과 같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  
-----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  
-----  
-----

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 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생략)

② 삭제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때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기업의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5. (생략)

④·⑤ (생략)

〈신설〉

-----  
-----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

5.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  
-----  
-----  
-----.

1. ----- 제12호에 따라 -----  
-----

2. ----- 일정기간 동안 -----  
-----  
-----  
-----

3. 그 밖에 -----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  
----- 제14조에 따른 -----  
----- 해당 -----  
-----

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

제39조(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 영 제 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건립한 지식산업센터

3. 4. (생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시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삭제

5. ~ 11. (생략)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

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 -----  
-----  
-----  
-----.

1. -----  
-----  
-----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  
-----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건립한 지식산업센터

3. 4.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  
-----  
-----  
-----.

5. ~ 11. (현행과 같음)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  
-----

<p>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부동산개발신탁(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으로 구분한다) 으로 한다.</p>	<p>----- ----- -----.</p>
<p>제43조(공유임야의 처분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u>한하여</u>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p>	<p>제43조(공유임야의 처분 제한) ----- ----- <u>한정</u> <u>하여</u> ----- -----.</p>
<p>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p> <p>②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청사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p>	<p>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따른 ----- ----<u>무너질 위험</u>----- -----.</p>
<p>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생략)</p> <p>②제1항 <u>규정에 의하여</u>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p> <p>③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p>	<p>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따라 ----- ----- -----.</p> <p>③----- ----- <u>제1항에 따른</u> ----- -----.</p>
<p>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p>	<p>제50조(정의) ----- ----- <u>그 밖에</u> ----- -----.</p>
<p>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략)</li> <li>3. 사용자가 제53조의 <u>규정에 의한</u>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li> <li>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li> </ol>	<p>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현행과 같음)</li> <li>3. ----- <u>제53조에 따른</u> ----- -----</li> <li>4. <u>그 밖에</u> ----- -----</li> </ol>
<p>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u>규정에 의한</u>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략)</li> </ol>	<p>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ol>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비품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생략)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라 -----  
-----  
-----.

제59조(인계인수 등) ①제55조에 따라 -----  
-----  
-----.

② -----  
----- 운영비중 -----  
-----  
-----.

- 1.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

제61조(준용) -----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

제8장 보칙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  
-----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  
-----  
-----.

② -----  
규칙에서 -----  
-----.

③ -----  
-----  
----- 규칙에서 -----  
-----.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  
----- 규칙에서 -----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

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생략)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65조(공유재산의 합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구청장·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1. -----  
-----  
-----.

가. (현행과 같음)

나. 그 밖에

-----  
-----

2. ----- 그 밖에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공유재산의 합필) -----  
공유재산 중 -----  
----- 해당 -----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 해당 -----  
----- 해당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제67조(시행규칙) ----- 필요한 -----  
-----.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생략)
-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 ④ (생략)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4.25.] [법률 제14937호, 2017.10.24., 일부개정]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4. 25.]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일부개정]

제43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②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9.7.27., 2011.4.1.>
- ③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 ⑤법 제46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 가격·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미첨부 사유 1호에 해당됨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천상욱